

상담기록관리부

(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)

상담일시	2022.10.27.(목)			상담유형	☒ 방문 ☐ 전화 ☒ 기타(메신저)		
상 담 요청자	성명		생년월일				
	소속/직위(직급)	팀/	급)	연락처	064-780-3		

상담 내용

공사 업무용 PC 구매업체(업체명 :)로부터 우편을 통하여 해당 업체 로고 등이 인쇄된 '마우스 장패드' 1개를 받았는데, 해당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문의

상담 결과

1. 「청탁금지법」 제2조제3호 및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제2조제3호에 의거 금전, 물품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“금품등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마우스 장패드는 금품등에 해당
2.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공사 업무용 PC 구매업체는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.
3. 「청탁금지법」 제8조제2항 및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나, 「청탁금지법」 제8조제3항제7호 및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제3항제7호에 의거 ‘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’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,
4. 해당 마우스 장패드는 대상의 특정없이 조달청을 통해 PC를 구매한 전 기관 대상으로 발송한 것이며, 해당 업체 홍보를 위해 업체명, 로고 등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「청탁금지법」 제8조제3항제7호 및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제3항제7호에 따른 ‘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,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

기념품 · 홍보용품 제공	
Q2	당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광고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. 매년 탁상 달력을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?
A	사안의 업체와 거래관계가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탁상 달력의 경우에도 해당 달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·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, 기념품 ·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· 명칭 표시 유무, 제작 목적, 가액,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.

<국민권익위원회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>

2022 년 10월 27일

행동강령책임관

강종훈



【별지 제20호 서식】 <신설 2018.4.18., 개정 2019.10.31.>

상담기록관리부

(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)

상담일시	2022.12.21.(수)	상담유형	[√] 방문 [] 전화 [√] 기타(메신저)
상 담 요청자	성명	생년월일	
	소속/직위(직급, 팀/급)	연락처	064-780-3

상담 내용
마음에온 ! 전기공사 감리(업체명: ...)로부터 본인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보내어 왔는데, 해당 금품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문의

상담 결과

- 「청탁금지법」 제8조제2항 및 「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.
- 해당 용역사는 「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」 제2조제1호리목에 의거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법인이므로 직무 관련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.
- 현금 일십만원(W100,000)은 「청탁금지법」 제2조제3호가목 및 「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금전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으로써 “금품등”에 해당함.
- 또한, 「청탁금지법」 제8조제3항제2호 및 「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」 제18조제3항제2호에 의거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오만원(W50,000) 이하의 경조사비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
- 현금 오만원(W50,000)을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오만원(W50,000)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.

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·후원·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대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③ 제10조의 외부감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 12. 16.>

-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삼급 공직자등이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
-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. 다만, 선물 중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법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·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.

<출처 :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>

2022년 12월 21일

행동강령책임관

강 종 훈 (인)